

제323회 임시회  
2013. 9. 11.(수)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수)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3년 8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9월 4일

-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규정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정하고,

○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부서명칭 변경 : 4건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문구삽입 및 조항 신설 : 2건
  - 부서명칭 변경(경제정책과, 건축문화과) : 2건
- 권한위임사무 신설 : 24건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 (1건)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등(8건) : 문화예술과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1건) : 균형개발과
  -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영업의 등록, 정지, 취소 등 (12건) : 환경정책과
  - 청내 전보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2건) : 충북경자청장
-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이양) 변경(삭제) : 17건
  - 위임사무의 변경 : 11건
  - 위임사무의 삭제 : 2건
  - 사무이양에 따른 삭제 : 3건(도 → 시·군)
  - 업무이관에 따른 삭제 : 1건(충청북도지사 → 농업기술원장)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 54건
  -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의 자구수정 : 9건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24건
  - 일련번호 정비 : 21건

## ※ 부서별 검토사항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별로 검토
  -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23조 제3

항의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과 「재해구호법」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개정한 것임.

- 농산지원과의 업무 중 “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면서 삭제를 하였음.
- 축산과는 「약사법」 제45조 제2항의 개정으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약사변경신고의 수리”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업무로 사무 이양됨에 따라 위임업무에서 삭제를 한 것임.
- 문화예술과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의 내용을 변경한 것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6조제1항·제4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의 신설로 인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업무 사항”을 시·군 위임사무에 추가한 것임.
- 환경정책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및 행정처분”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업무로 사무 이양됨에 따라 위임업무에서 삭제를 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업무 권한 12건을 시·군 위임사무에 추가한 것임.
- 균형개발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무” 내용 중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를 시·군 권한 위임사무로 추가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및 공원관련업무” 등 6건을 변경한 것임.

○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부서명칭 변경 4건, 상

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이양) 변경(삭제) 17건,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54건은 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 권한 위임사무로 신설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 등 24건의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 게 권한위임하는 사무규정의 신설과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위임 대상사무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본 조례가 도청 전부서를 총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 후 1년 이상 상당기간 조례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에게”를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 정 과	1 2 3 4	· 도세 징수유예 · 도세 기한의 연장 · 도세 결손처분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96조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회 계 과	1 2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 (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복 지 정 책 과	1 2 3 4	· <u>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 (단, 목적·명칭·주사무소·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변경은 제외)</u>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단, 해임명령은 제외) · <u>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 및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지도·감독</u> · 재해구호에 대한 다음사항 <u>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u> <u>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밖의 생활필수품 제공</u> <u>다. 의료서비스의 제공</u> <u>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u> <u>마. 위생지도</u> <u>바. 장사의 지원</u>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재해구호법 <u>제4조</u> , 제5조
보 건 정 책 과	1 2 3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 안마시술소의 청문 및 행정처분  ·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식품의약품안전과	1	· 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a href="#">제31조</a>
	2	· 한약업사의 허가대장비치 및 허가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a href="#">제34조</a>
	3	·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a href="#">제35조</a>
	4	·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5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6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7	·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8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9	· 마약의 소매 보고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10	· 행정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11	· 청문(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5조
	12	·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13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a href="#">경제정책과</a>	1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p> <p>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p> <p>바. 영업정지</p> <p>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p> <p>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p> <p>자. 등록수수료 징수</p> <p>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p>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p> <p>같은 법 제12조제7항</p> <p>같은 법 제13조제1항</p> <p>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17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p> <p>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2	<p>·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p> <p>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p> <p>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p>
	3	<p>·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 사업에 관한 권한</p> <p>가. 사업(변경) 허가</p> <p>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p> <p>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p> <p>라. 지위승계 신고</p> <p>마. 허가의 취소 등</p> <p>바. 과징금 부과징수</p> <p>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p> <p>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해임 요구 등</p> <p>자. 청문</p> <p>차. 과태료 부과징수</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p> <p>같은 법 제4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52조</p>
	4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p>	<p>같은 법 제34조</p>
	5	<p>·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p> <p>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p> <p>같은 법 제39조제6항</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	<p>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p> <p>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p> <p>·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에너지사용량 신고</p> <p>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p> <p>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조제1항</p> <p>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기업유치 지원과	1	<p>·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p>
미래 산업과	1  2       3	<p>·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p> <p>·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청문 등</p> <p>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증인</p> <p>다. 보고 및 검사 등 (계량기 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p> <p>라. 개선명령</p> <p>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p> <p>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p> <p>·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p> <p>나. 보고 및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전기사업법 제71조</p> <p>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8조 및 제41조</p> <p>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51조</p> <p>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2조</p> <p>같은 법 제41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li> <li>나. 보고 및 검사 등</li> <li>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ul> </li> </ul>	<p>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8조</p>
농업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li> <li>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li> </ul> </li> </ul>	농어촌정비법 <a href="#">제114조</a>
농지원과	<p><a href="#">1</a></p> <p><a href="#">2</a></p> <p><a href="#">3</a></p> <p><a href="#">4</a></p> <p><a href="#">5</a></p> <p><a href="#">6</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li> <li>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업시행인가</li> <li>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li> <li>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li> </ul> </li> <li>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li> <li>나. 소규모(10ha 미만) 개간사업</li> </ul> </li> <li>농업기반시설의 등록</li> <li>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li> <li>도유재산 용도폐지</li> </ul>	<p>농어촌정비법 제24조</p> <p>농어촌정비법 제9조</p> <p>농어촌정비법 제9조</p> <p>농어촌정비법 제9조</p> <p>농어촌정비법 제26조</p> <p>농어촌정비법 제26조</p> <p>농어촌정비법 제26조</p> <p>농어촌정비법 제17조</p> <p>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p>
원예유통식품과	<p>1</p>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li> <li>과태료 부과·징수</li> </ul>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2항</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 산 과	1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2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제18조 동물보호법 제19조 동물보호법 제20조 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법 제22조
산 립 녹 지 과	1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
	2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13조
	3	· 종·묘생산업의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4	·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같은 법 제16조
	5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보호법 제8조
	6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7	· 간선임도 설치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8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예 술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li> <li>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li> <li>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li> </ul> </li> </ul>	<p><a href="#">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a></p> <p><a href="#">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a></p> <p><a href="#">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a></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li> <li>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li> <li>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li> <li>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li> <li>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li> <li>바. 청문</li> <li>사. 수수료</li> <li>아. 과태료의 부과·징수</li> </ul> </li> </ul>	<p><a href="#">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6조제1항·제4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a></p> <p><a href="#">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a></p> <p><a href="#">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a></p> <p><a href="#">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a></p> <p><a href="#">같은 법 제29조</a></p> <p><a href="#">같은 법 제30조</a></p> <p><a href="#">같은 법 제31조</a></p> <p><a href="#">같은 법 제36조</a></p> <p><a href="#">같은 법 시행령 제17조</a></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u>건축문화과</u>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 보고 · 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li> </ul>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li> </ul>	주택법 제16조
균 형 개 발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 군수의 <u>허가 · 인가 결정 · 승인 등으로</u> 의제 되는 <u>도시 · 군관리계획의</u> 결정 및 변경</li> </ul>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u>도시 · 군관리 계획의</u> 결정 및 변경결정(<u>도시 · 군계획위원회</u> <u>허가</u> 설치된 시 · 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li> <li>나. 주차장</li> <li>다. 궤도</li> <li>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li> <li>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li> <li>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li> <li>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li> <li>아. 공동구</li> </ul> </li> </ul>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 카. 전기공급설비 타. 가스공급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열공급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u>더. 운동장</u>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머. 도서관 버. 문화시설 서. 연구시설 어. 사회복지시설 저. 공공직업훈련시설 처. 청소년 수련시설 커. 유수지 터. 방화설비 퍼. 저수지(댐 제외)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하수도 모. 도축장 보. 장례식장 소. 종합의료시설 오. 폐차장 조.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하천(소하천에 한함) 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화장시설 누. 보안시설 두. 자연장지 루. 공동묘지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u>도시지역 외 지역과 기존 면적 포함 5만㎡미만의 도시 지역의</u>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 및 변경( <u>단, 도지사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u> )	같은 법 제30조, 제49조, 제50조
	6	· <u>도시·군관리계획</u> 에 관한 지형도면 <u>승인·고시</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7	· <u>도시·군관리계획 결정</u> 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9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 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0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1조
	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2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8조
	13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 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li> <li>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li> <li>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li> <li>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항</li> <li>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li> <li>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li> <li>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li> <li>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li> <li>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li> <li>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li> <li>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li> <li>바. 도로에 관한 조사</li> <li>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li> <li>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li> <li>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법 제29조</li> <li>같은 법 제31조</li> <li>같은 법 제54조제1항</li> <li>도로법 제67조제1항</li> <li>같은 법 제75조</li> <li>같은 법 제76조의2</li> <li>같은 법 제78조</li> <li>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li> <li>도로법 제64조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li> <li>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유재산 용도폐지</li> </ul>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li> </ul>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li> </ul>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교통 물류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li> <li>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li> <li>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li> <li>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li> <li>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li> <li>자동차관리법 제7조</li> <li>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li> <li>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li> <li>자동차관리법 제14조</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li> <li>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 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li> <li>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li> <li>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li> <li>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 명령 및 임시 검사명령</li> <li>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li> <li>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관리법 제16조</li> <li>같은 법 제20조, 제21조</li> <li>같은 법 제27조</li> <li>같은 법 제28조</li> <li>같은 법 제37조</li> <li>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li> <li>자동차등록령 제31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li> <li>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li> <li>나.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li> <li>다.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li> <li>같은 법 제26조</li> <li>같은 법 제28조</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li> <li>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li> <li>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li> <li>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li> <li>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li> <li>마. 등록번호표의 반납</li> <li>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등</li> <li>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li> <li>아. 보고 및 검사</li> <li>자.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li> <li>차. 건설기계저당권 등록</li> <li>카.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관리법 제3조</li> <li>같은 법 제3조, 제5조</li> <li>같은 법 제6조</li> <li>같은 법 제7조</li> <li>같은 법 제9조</li> <li>같은 법 제11조</li> <li>같은 법 제8조의2</li> <li>같은 법 제35조</li> <li>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li> <li>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li> <li>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같은 법 제34조의2
		파.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등록의 수리	같은 법 제21조
		하.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24조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5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변경신고, 폐지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6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7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8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같은 법 제38조
		다. 공사의 완성	같은 법 제38조제4항
		라. 사용개시	같은 법 제39조
		마. 사용약관 인가	같은 법 제40조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같은 법 제41조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같은 법 제42조제3항
		아. 터미널의 관리	같은 법 제42조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같은 법 제43조
		차. 사업개선 명령	같은 법 제44조
		카.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같은 법 제48조
		파. 면허의 취소	같은 법 제85조
		하.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8조
		거. 청문	같은 법 제86조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같은 법 제53조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같은 법 제5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러.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47조제3항·제4항
	9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4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10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방 재 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 제7항· 제8항·제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6호
	10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하천법 제33조제6항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예치	같은 법 제33조제8항
	12	·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4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16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
	17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18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9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하천법 제38조제1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인가· 고시· 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하천법 제38조제4항
	21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2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 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3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 통지	같은 법 제76조
	2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 등의 사용· 수용	같은 법 제78조
	25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6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89조
	27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 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8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9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0	·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31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2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3	· 보상금의 공탁	같은 법 제8조
	34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5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같은 법 제11조
	37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2008.1.17> 제2항
	38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제18조제2항
	39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 제3항
	40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같은 법 제2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3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4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항
	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제7항
	6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8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a href="#">9</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li> <li>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중 수질3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리</li> <li>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li> </ul>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항</p> <p>같은 법 38조의3제1항 제2항</p>
	<a href="#">1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li> </ul>	같은 법 제68조
	<a href="#">1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li> </ul>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a href="#">12</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li> <li>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li> <li>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li> <li>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li> <li>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li> <li>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li> <li>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li> <li>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li> <li>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li> <li>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li> <li>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li> </ul>	<p>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2조제2항</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제48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a href="#">13</a>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a href="#">14</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a href="#">15</a>	<p>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p> <p>·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p> <p>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p> <p>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p> <p>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p> <p>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p>	<p>같은 법 제31조, 제33조</p> <p>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6 별표 8</p>
	<a href="#">16</a>	<p>· <a href="#">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다음 권한</a></p> <p><a href="#">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 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a></p> <p><a href="#">나.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명령</a></p> <p><a href="#">다. 개선명령</a></p> <p><a href="#">라. 폐업 등 신고의 수리 및 조치명령</a></p> <p><a href="#">마.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a></p> <p><a href="#">바. 권리·의무 승계의 수리</a></p> <p><a href="#">사.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 신고의 수리</a></p> <p><a href="#">아.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a></p> <p><a href="#">자.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등</a></p> <p><a href="#">차. 과징금의 부과·징수</a></p> <p><a href="#">카. 청문의 실시</a></p> <p><a href="#">창. 과태료의 부과·징수</a></p>	<p><a href="#">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a></p> <p><a href="#">같은 법 제22조</a></p> <p><a href="#">같은 법 제23조</a></p> <p><a href="#">같은 법 제26조</a></p> <p><a href="#">같은 법 제27조</a></p> <p><a href="#">같은 법 제28조</a></p> <p><a href="#">같은 법 제30조</a></p> <p><a href="#">같은 법 제39조</a></p> <p><a href="#">같은 법 제45조</a></p> <p><a href="#">같은 법 제49조</a></p> <p><a href="#">같은 법 제50조</a></p> <p><a href="#">같은 법 제63조</a></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질 관리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li> </ul> </li> </ul>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등록 및 변경등록</li> <li>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li> <li>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li> <li>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li> <li>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li> <li>바. 출입·검사·수거 등</li> <li>사. 지도 및 개선명령</li> <li>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li> <li>자. 폐기처분 등</li> <li>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li> <li>카. 청문</li> <li>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li> <li>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li> <li>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li> </ul> </li> </ul>	<p>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2항</p> <p>같은 법 제21조제7항</p> <p>같은 법 제24조</p> <p>같은 법 제25조제3항</p> <p>같은 법 제41조 제2항</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제47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51조 제1항·제3항</p> <p>같은 법 제51조의2</p> <p>같은 법 제61조 제2항·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li> </ul>	먹는물관리법 제42조

[별표 5]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7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u>총무과</u>	<u>1</u>	<u>·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u> <u>·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u> <u>(단, 개방형 직위는 제외)</u>	<u>지방공무원법</u> <u>제6조제2항</u>



## 관련법령 발췌

### 공통사항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총 무 과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복지정책과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 하려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지도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소방장재청장은 매년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의약품안전과

### □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
2. 한약업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한약업사의 시험합격 연월일
4. 영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축 산 과

###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 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20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①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4.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5.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를 말한다)
6.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약사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허가증과 변경된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과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생략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생략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 ③ 생략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 확인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청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30만원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 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의 변경
5. 영업소 면적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전기 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 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균형개발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 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 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 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 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운동장)**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 환경정책과

###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



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제50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5.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 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9.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1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